



環境影響評價 制度의 概要

The Brief definition & explanation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李 金 洙*
Lee, Kum Soo

1. 서 론

우리들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이상적인 상태와 기대하는 수준으로 보존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이며 미래의 책임이다. 동시에 인류 공통의 영원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편익을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도 시대변천과 함께 극히 필요한 요구일 것이다. 그 실현에는 산업활동의 더 많은 진흥과 부단의 개발행위가 요구되며 그러한 개발행위는 인간생활에 중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손상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는데는 계획전에 주변환경에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개발이 경제활동과 생활환경 보전과의 조화에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의를 갖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인 것이다.

공해나 자연파괴 등의 환경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그 복구대책에는 많은 비용과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완전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환경오염방지를 미연에 피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행정의 기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업시행에 앞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보전법이 목적하는 위해예방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2. 정 의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없고 다만 제2조 정의에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개발행위등이 공기, 물, 흙, 생물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및 그 방지책에 대하여 대안의 비교를 포함하여 사전에 예측과 평가를 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라고 할 것이며 또한 UNEP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확인하고 예측하며 분석하여 공표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3. 목 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첫째 목적은 사업의 계획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경보전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경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행하여질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훌륭한 결정을 행하는데 있어 불가결의 요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보전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인 이상 사업자에 의한 환경보전상의 적절한 배려

* 環境管理技術士(大氣管理),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理事

를 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청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 목적은 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반영시킴에 있는 것이다. 단, 사업실시에 즈음하여 공해의 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하여 적정하게 배려함은 공익 즉, 주민 건강과 문화적 생활의 확보에 공헌하는 사실을 알리는데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둘째 목적은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과 관계지역 주민의 관여 방법을 명확화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계획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기술지침과 심사지침을 정하여 사업실시에 즈음하여 환경보전을 기하는데 있다.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 제 5조 1, 2, 3 항에 의거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검토, 평가업무의대행 등을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 4 조에서는 평가서 대상범위의 확대 및 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 및 경유기관을 명시하였고, 환경청 규칙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을 명시하여 75 개의 대행기관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책임은 환경청 고시 제87-13호(1987. 7. 27)의 고시 규정 제 4 조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착하는 것이고 작성 대행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대행자는 어디까지나 대행자인 것이다. 고로 환경보전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선언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는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사업의 시비(是非)를 판단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실시의 판단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청고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업실시의 플러스(+)면과 환경에 마이너스(-)면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예측 평가는 가급적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하고 측정

이 불가능한 것만이 정성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작성주체 및 협의 요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기술지침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예측, 평가를 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의 하나이다. 이 조사, 예측, 평가는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비용을 들여 행하는 것이지만 그 조사, 예측, 평가가 과학적이고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전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조사, 예측, 평가의 항목이나 방법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의 근거가 될 지침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이 기술지침을 근거로 조사등을 행하고 그 결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에 협의 요청하게 된다.

즉, 기술지침이란 사업자가 공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있어서 조사, 예측,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 기술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나 심사자 모두가 근거로 할 수 있는 지도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작성되는 것이다. 그 형태는 Program 형의 기술지침과 사업공동지침형 및 사업별지침형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작성중인 것은 보다 세심한 사업별지침형으로 작성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Program 형의 일반지침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

6. 조사, 예측, 평가의 실시

현황, 조사, 예측, 평가에 있어서는 각 사업마다의 기술지침에 의한 그 수준등에 의하여 항목과 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의 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과학적 식견에 의거 내용의 정확은 물론이고 기재의 방법에도 다른 사람이 알기 쉽도록 되도록 평이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7. 환경청에의 협의요청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오염의 미연방지를 사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현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환경부분위원회 의견을 구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인 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상의 적절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즉 지금에는 지역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민원 사항이 많은 것도 이 까닭이다.

있는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 고려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정의에 기록되었고 환경보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환경청에 협의요청을 하게 되며, 회신을 기대하는 날로부터 50일 전에 제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옳고 그름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차제에 평가서 구성 및 기재 요령(제6조)에서 별표 1에 정한 항목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 따라 또한 제안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알맞는 접근방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8. 결 론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會員身上變更申告案内

本會에서는 隔年制로 會員名單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昨年度 第32回 技術士會員을 名單에 挿入하는 관계로 會員名單發刊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今年 2月中에는 發刊 豫定이오니 變動事項이 있으신분은 速히 電話로 連絡을 하여 精確한 會員名單發刊에 차질없도록 적극 協助 있으시기 바랍니다.

(社)韓國技術士會事務局

Tel : 566-5875·557-1352